

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용 호 의원

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!
김 용 호 의원입니다.

지난 8월 29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씀 드리면, 현행 조례에서 "한옥밀집지역"에 대한 정의를 관련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나,

근거가 되는 조례가 타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
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
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